



중앙 제 2025-65호 2025. 5. 26.		<h1>가 정 통 신 문</h1>	교장실	240-1820
			교무실	240-1822
			행정실	240-1800

< 청소년 선거벽보 · 현수막 훼손 관련 교육 >

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기간의 개시(5.12.~)로 벽보·현수막 등 선전시설의 게첩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청소년들의 장난으로 인한 벽보 훼손 사건이 학교주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. 「공직선거법」 위반 행위는 단순 경범죄가 아닌 **중대범죄로 처벌 받을 수 있음**을 강조 드리며, 청소년들의 호기심·장난으로 인한 「공직선거법」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 및 학부모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.

*** 관련 규정**

「공직선거법」 상 벌칙 규정	
-----------------	--

공직선거법 제240조(벽보,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)
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·현수막 기타 선전 시설의 작성·게시·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·철거한 자는 **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**

이 법에 의한 벽보·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종류:
 선거벽보(공직선거법 제64조) 선거현수막(공직선거법 제58조의2 등) 기타 선전 시설(선거운동을 위한 피켓, 차량 랩핑 광고, LED 전광판 등)
훼손 행위의 유형: 낙서, 찢거나, 담배불·라이터 불로 지지는 행위 등

2025년 5월 26일

전 주 중 앙 여 자 고 등 학 교